

	강의전담교원인사규정	규정번호	3-3-2
		제정일자	2008.01.01.
		개정일자	2019.08.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강의전담교원의 자격과 임용 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의전담교원이라 함은 근무조건, 처우, 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고 강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강의전담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3. 기독교인으로서 세례 받은 자로 한다.

제4조(교원의 직명) 강의전담교원의 직명은 조교수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신규임용교원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규교원의 임용절차는 [별표2]와 같다.
- ③ 신규임용교원 지원자에 대한 평정은 [별표3][별표4][별표5][별표6]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 ④ 신규임용교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① 강의전담교원은 필요한 교과외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한다.

- ② 강의전담교원은 학사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강의전담교원은 교수회의를 비롯한 제반 공식기구의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용조건 및 재계약) ① 강의전담교원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재계약 대상자는 재임용대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별표7]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제출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없이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 ④ 재임용은 [별표8]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⑤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⑥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복무규정에 따른다. 단, 연구학기제 운용 대상에는 제외한다.

제8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연봉금액
3. 기타 계약조건(사학연금, 건강보험적용, 각종 세액공제 등)

제9조(퇴직금) 강의전담교원은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책임시수) 강의시간표작성규정 제2조(주당책임시수)에 의거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초과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1조(겸직금지) 강의전담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은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 중 2010년 3월 1일 이후 임용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 중 2012.7.22 현재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자의 직명은 2012.7.22부로 조교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